

A-14 : 국내 현장 평가 지침 사례

제 1조: 목 적

준공된 국내 현장의 공사. 품질, 안전 및 원가관리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상벌을 시행함으로써 품질 향상을 기하면서 원가를 절감하도록 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책임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제 2조: 현장평가 범위

1. 현장평가의 범위는 원가 및 현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실적으로 하고 공사규모에 따라 5점까지 가감한다.
2. 평가대상 기간은 실 착공일로부터 실 준공일까지로 한다.
3. 준공현장의 평가는 개별 현장의 준공일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상벌 적용도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 3조: 적용범위

1. 국내현장의전체공사에 적용한다.(단 철구공사는 직원이 주재하는 현장에 한한다.)
2. 평가는 현장단위로 하며 동일한 현장에서 각기 다른 계약건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될 경우 동일현장 소장과 동일예산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1개의현장으로 본다.
3. 평가결과에 대한 상벌 적용은 현장소장과 계약사원, 임직을 포함한 전 직원으로 한다.(경비등 용역직원 제외)
4. 현장소장이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 시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현장소장평가)
5. 현장 포상금액 산출기준은 전체 공사기간의 1/2이상 근무한 직원당 해당 금액의 100%, 1/2미만 근무한 직원당 90~10%범위에서 근무율로 차등계산하며 36개월 이상되는 공기의 현장은 연장 6개월마다 10%씩 최고 50%까지 가산 계산한다.
6. 포상금 총액은 현장관리부서에서 확정하되 직원별 기여도를 감안하여 현장소장이 개인별 지급액을 조정하여 현장관리부서에 통보한다.

제 4조: 평가기준

1. 원가 및 현장관리부분: 80점
2. 품질관리부분: 10점

3. 안전관리부문: 10점

4. 공사규모부문: 1+2+3 에 연간기성 50억 기준(0점) 10억 증감시 5점을 한도로 하여 1점씩 가감

5. 평가위원회 10점을 한도로 가감

1~5의 점수를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A 평점현장 : 평가점수 90점 이상

B 평점현장 : 평가점수 80점 이상~90점 미만

C 평점현장 : 평가점수 70점 이상~80점 미만

D 평점현장 : 평가점수 60점 이상~70점 미만

E 평점현장 : 평가점수 50점 이상~60점 미만

F 평점현장 : 평가점수 50점이만

제 5조: 업무관장

1. 종합결과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결과를 처리하는 업무는 현장관리 부서에서 관장한다.

2. 원가 및 현장관리 평가와 안전관리 평가는 공무부에서 관장한다.

3. 품질평가는 품질 경영실에서 관장한다.

제 6조: 평가방법

1. 모든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한다.

2. 원가 및 현장관리평가는 별첨 원가 및 현장관리 평가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3. 품질관리평가는 품질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현장관리부서에 통보한다.

4. 현장관리부서는 준공현장이 발생하면 안전 및 현장관리 평가와 품질관리 평가를 합산한 후 규모별 점수를 가감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평가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7조: 평가위원회 설치

1. 준공현장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의장은 사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경영대리인 및 각 기술부 임원과 현장관릴 임위로 하며 현장관리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제 8조: 평가위원회의 임무

1. 위원회는 제6조 4항의 점수를 심사하고 회사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공사에 기여, 대외 기관의 포상 등을 감안하여 10점까지 가산할 수 있으며 회사의 명예실추,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사고, 공사 진행중 문제야기, 준공후의 하자발생 상황 등을 감안하여 10점까지 감할 수 있다. 단 사안이 중대할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포상에서 제외한 경우와 가산 및 감산의 경우 사유를 명기한다.
2. 위원회는 C등급 현장중 예산대비 절감실적과 예산 절감 노력을 감안하여 30%~50% 범위에서 특별상여를 지급할 현장을 선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1, 2항의조정을 거친후 현장을 종합평가하여 상별 사항을 심의 확정한다.

제 9조: 상별 기준

1. 본 지침에 의하여 종합평가 된 현장의 상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 A 평가현장 : 사장포창 및 특별상여금 (총급여의 90%)
 - B 평점현장 : 특별상여금 (총급여의 75%)
 - C 평점현장 : 상벌없음
 - 단,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된 현장은 특별상여(30~50%)
 - D 평점현장 : 현장소장 경고(대포이사)
 - E 평점현장 : 경고(평가위원회에서 경고범위 결정)
 - F 평점현장 : 징계 (평가위원회에서 징계범위 결정 징계위원회 회부)